#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31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한민수·손명수·복기왕

김 현・김우영・허 영

정성호 · 김태선 · 박민규

정동영・박상혁・황 희

이기헌 · 황정아 · 민병덕

박홍배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 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 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을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준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 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 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 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 ④ ~ ⑦ (생 략)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저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 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의 요청 등 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 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 저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세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5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
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대통령이로 정하는 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② ~ ⑤ (생 략)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부 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 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

<u>제5항</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 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 3. (생략)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일부의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다만,제1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폐업을명하여야한다.

- 1. 2. (생략)
- 3. <u>제22조제5항</u>을 위반하여 신 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u>제22조제5항</u>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2조제6항</u>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 6. (생 략) ② (생 략)